

제19조의6(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)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”이란 과징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

②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,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.

③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(청문)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.

- 1. 법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의 취소
- 2.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수리의 취소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수출입규제폐기물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에 대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수출입허가를 받거나 수출입신고를 한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,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179호, 2020. 3. 31. 공포, 10. 1. 시행)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등을 수출입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수출입규제폐기물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,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부적정하게 수출 또는 수입한 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20년 9월 29일

국무총리 정세균

국무위원

조명래

환경부장관

●대통령령 제31072호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환경부 및 고용노동부”를 “환경부·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”로 한다.  
 제22조의 제목 “(권한의 위임 및 위탁)”을 “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2호 중 “수리 등”을 “또는 변경신고의 수리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6호 중 “과징금 처분”을 “과징금 처분 및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”으로 한다.  
 제23조의2 중 “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”를 “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”로 한다.  
 별표 2 제2호과목의 위반행위란 중 “법 제31조를”을 “법 제31조제1항 전단을”로 하고, 같은 호 하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서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|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하.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| 법 제64조제2항 제3호의2 | 180 | 240 | 300 |
|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,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「화학물질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17182호, 2020. 3. 31. 공포, 10. 1. 시행)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변경신고의 수리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,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위반 시 180만원, 2차 위반 시 240만원,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,  
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여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20년 9월 29일

국무총리 정세균

국무위원

조명래

환경부장관

●대통령령 제31073호

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댐사용권·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”을 “댐사용권 및 수도시설관리권”으로 한다.